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 협력 실증 확산 지원 사업」 본사·지사·부설 연구소 등 창원특례시 내 이전 협약서

신청 기업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주 생산품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 책임자	부서/직위			성 명	
	휴대전화	-	-	E-mail	- -
이전 정보	사업업종			세부업종	
	주요활동				
	이전예정 종업원수	경영: 명, 연구: 명, 생산: 명, 기타: 명			
	이전예정일	년 월			

본사·지사·부설연구소 등 창원특례시 내 이전 협약 사항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AI 기반 슬립테크 국제 협력 실증 확산 지원사업」(이하 “본 사업”)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창원특례시(이하 “창원시”)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활동, 기술협력, 인력 교류 및 성과 확산을 수행하고 본사, 지사 또는 부설 연구소 등을 창원시로 이전함으로써, 창원시 바이오·나노·디지털 헬스산업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 및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정의)

1. 주관기관 : 사단법인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2. 참여기업 :
3. 기업이전 대상기업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 중 창원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기업
4. 기업이전 :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본사, 지사 또는 부설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을 창원시로 이전하는 것
5. 성과활용기간 : 협약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3조 (기업이전 및 유지 의무)

- ①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형태로 창원시에 기업이전을 해야 한다.
 1. 본사
 2. 지사
 3. 부설 연구소
- ② 기업이전 및 운영의 형태,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창원시 내에서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로 본조에 따른 기업이전이 곤란한 경우,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전협의 및 승인 하에 별도의 지역 기여 방안(관내 기업과의 공동법인 설립 등)으로 기업이전 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기업이전은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참여기업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실질적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기업이전 완료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 ⑥ 기업이전 대상기업은 협약종료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기업이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합병, 구조조정, 정책변경 등)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유지기

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⑦ 기업이전 유지기간 내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재이전해서는 안 되며, 관련 조직을 폐쇄·축소하는 등 창원시 내에서의 실질적 경제활동이 결여되어서도 안 된다.
- ⑧ 기업이전 이후 참여기업의 주요 활동(연구·개발, 실증, 인허가 등)은 실질적으로 창원시 내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근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활동의 특성(출장, 실증 등)을 고려하여 창원시 상주 여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1.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이전 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2. 기업이전 대상기업의 이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3. 기업이전 관련 계획, 이전 형태, 이전 소재지 등 주요 변경 사항 중 본 협약의 목적 및 이전 유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및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4. 본 사업 및 창원시 연계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기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5. 지원사업 및 이전 관련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필요한 제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6.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한 경우,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 사업 협약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환수금은 비례 원칙에 따라 이행기간 및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조 (참여기업의 권한과 책임)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1. 참여기업은 제4조에서 정한 이전 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2. 참여기업이 소재지, 이전 형태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전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연구·실증·사업화 관련 인력을 창원시 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또는 부설 연구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 4. 신규인력 채용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창원시 거주자 또는 관내 대학 졸업생 채용을 우선 고려한다.
- 5.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외주 용역, 시제품 제작, 원부자재 구매는 동일한 조건(품질·가격·납기 등)일 경우 창원시 소재 기업을 우선 고려하여 활용한다.
- 6. 본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적 경험, 데이터 및 노하우가 지역 산업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확산에 협력한다.
- 7. 사업성과 발표 및 홍보시 “창원특례시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한다.
- 8. 본 사업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원시의 미래산업 육성 및 후속 국비 사업 기획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6조 (사후 관리 및 성과 활용)

- ① 참여기업은 성과활용기간 동안 주관기관의 사후관리 및 성과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은 지원사업의 참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성과 활용보고서 제출
 - 2. 홍보·논문·보도 자료 등에 지원 사실 명시
 - 3. 기업이전 유지의무 준수
- ③ 참여기업은 본 사업 종료 후 5년간 주관기관의 성과조사(고용, 매출, 연구·실증 결과, 협력 사례, 고용·네트워크 형성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④ 성과관리는 이전 여부뿐만 아니라 사람·기술·네트워크·브랜드 측면의 종합적인 지역 기여도를 중심으로 수행한다.

제7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관련 법령, 지침, 사업 운영 요령 변경 시 이에 따른 협약 변경이 가능하다.

제8조 (협약의 해약 및 제재)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주관기관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기업이전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또는 본 협약에 따른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전확약 내용 및 지역 기여 조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중대한 귀책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협약 해약시 주관기관은 관련 법령, 사업 협약 및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 (기타)

-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사업운영 요령을 따른다.
② 본 협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 연구책임자 : (인)
참여기업 대표 : (인)